

제418회 국회  
(정기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9일(월)

장 소 여성가족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6)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1)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6)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2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8)
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7)
2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991)
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5)
2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3)
2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6)
2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8)
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6)
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8)

### 상정된 안건

|   |    |
|---|----|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    | 6  |
|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    | 6  |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    | 6  |
|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    | 6  |
|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    | 6  |
|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    | 6  |
|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                | 6  |
|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    | 6  |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8) .....  | 45 |
|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8) ..... | 46 |

---

|   |    |
|---|----|
|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6) ..... | 46 |
|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1) ..... | 46 |
|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3) ..... | 46 |
|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6) ..... | 46 |
|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     | 48 |
|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     | 48 |
|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     | 48 |
|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     | 48 |
|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     | 48 |

---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김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국회 와서 처음 두드려 보는 방망이라 좀 세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 여가위는 지난 21대에서 법안 통과율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22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회의 때 인사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소위원회 첫 회의기 때문에 국회 관행에 따라 간단하게 한 분씩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제 우측의 김남희 위원님부터 소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각오와 부탁 이런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성가족위원회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딥페이크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된 이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함께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위원장 김한규** 국회에서는 박수 치면, 의장님이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위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전진숙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전진숙 위원** 반갑습니다. 광주 북구을의 전진숙입니다.

아마 오늘 다루어질 법안은 민생 법안의 바로미터에 있는, 민생의 바로미터에 있는 법안들을 저희가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딥페이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의 시선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데 오늘 충분히 논의하고,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충분한 이야기를 하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시계 역순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한지아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한지아입니다.

사실 오늘 여가위의 법안들은 결국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법안들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저출생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전 여당 간사 서범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서범수 위원** 반갑습니다. 서범수입니다.

오늘 법안소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한규** 또 바뀌십니까?

○**서범수 위원** 바꿔 달라고 했는데 조치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하여튼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법안 중에 보면 양육비 이행 확보라든지 이런 법안은 정말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들 자체가 정말 쟁점이 없는 법안이면 우리가 서로서 협의를 잘해서 한 개라도 좀 더 빨리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김상욱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상욱 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아마 지역 내려가시면 많이들 듣는 말씀일 텐데 싸우는 것보다 일 좀 하라는 말씀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여가위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당

리당략보다는 정말 화합해서 법안 처리 또 국민들께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모습을 모범적으로 먼저 보이는 그런 여가위의 법안소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 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기 영합으로 하다 보면 과도한 또는 현실성이 부족한 또는 사문화되는 그런 법안들이 나올 위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 여가위에서 다루는 특히 양육과 관련된 또 성폭력과 관련된 그런 법안들은 시급성과 중요도가 아주 크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또 바로 현실 적용 가능하게 그리고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 되도록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법안들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회에서 제일 잘생기신 위원장님을 모시고 하게 돼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마지막으로 김남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김남근 위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위원장에게 아부도 좀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모드인 것 같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만 항상 잘 포용하시고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모시고 법안 심사를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법안 심사는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과 제때에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때로는 많이 충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올라온 양육비 그다음에 성폭력방지, 아동·청소년 성보호, 아동돌봄 지원 이것들은 내용들이 다 시사적으로 중요하고 또 신속하고 제때에 처리해야 되는 법이기도 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고 제대로 심사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면 법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해서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과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부분은 오늘 심사를 일단 유보하고 추후에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위해 신영숙 여성가족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관님과 함께 배석하신 분들께서 답변을 대신하시는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소속, 직위,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회의록 작성이 용이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건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보셨겠지만 정부 측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상세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다 얘기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양육비 이행확보 법안도 다 못 끝내고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남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현안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의 정합성이라든지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 오늘 마냥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대부분 정부가 반대하셨는데 위원장이라고 해서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를 할 테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은 여야 합의안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시간 관리에 좀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3)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7)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7)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84)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7)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1)
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7)
8.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7)

(10시21분)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7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1건의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첫 번째 소위자료 1쪽입니다.

박홍근·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도입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의 필요성과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국가재정 부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제도의 도입 형식으로 박홍근 의원안은 제정안 형식이고 나머지 6개 의원안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형식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이라는 양육비이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박홍근 의원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이 양육비이행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하는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제도 용어에 대해 박홍근·서영교 의원안은 ‘대지급’, 김남희·황명선·김미애·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선지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지급과 선지급의 특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고 현행법에 두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모두 존재하므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지는 논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자료의 글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 가능하면 ‘2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눈이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3페이지입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회에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경제 현실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아동 보호·양육에 대한 책임을 천명하는 입장에서 선지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도입 형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용어는 저희는 ‘선지급’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육비를 먼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3월에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한테는 ‘선지급’이라는 정체 용어가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좀 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선지급’으로 저희는 수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데요, 지금 의견은 딱 두 가지입니다. 1번 항목, 그러니까 법안 형식을 개별법으로 할 거나 아니면 법안 개정 형식으로 할 거나, 용어를 선지급이냐 대지급이냐 이 부분만 먼저 의견 주시고 세부 법률안은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개정으로 하고 선지급으로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김상숙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전진숙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도 동의합니다. 뭔가 의견을 덧붙이려다가 어차피 동의한 이상 불필요한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대지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뭐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대신 지급.

○전진숙 위원 대신 지급한다는 이야기지요.

○서범수 위원 대신 지급하는 건 아니지요?

○전진숙 위원 일단 나중에……

○소위원장 김한규 일단 대신 지급.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대신 지급한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한다는 개념이고 내가 갚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 오해가 있어서……

○서법수 위원 그런 게 포함이 될 수 있어서 대지급이라는 것보다 선지급이 낫겠지요.

○김남근 위원 뒤에 구상권이라는 얘기하고 연결시켜서 사실은 대지급이 더 정확한 용어인데……

○김상욱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생각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기 법조인들이 4명이……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체계적인 정합성과 법률 용어를 염격하게 보면.

○김상욱 위원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이렇게 됐습니다, 대지급이 정확한 표현인데.

○김남근 위원 제가 민법학자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대지급으로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쪽입니다.

각 의원안은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입니다, 신청요건.

박홍근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채무 불이행 시 대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현행 긴급지원 요건보다 엄격하고 양육비 대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의 개정안은 대지급 신청요건에 공통적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양육비 채권자가 법 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부 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비 채무 불이행의 기준과 관련하여 김한규 의원안처럼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까지 대상으로 포함할지 다른 4개 의원안처럼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만 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 진행 여부와 관련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이행법상 법률지원으로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요건 적용 여부입니다.

황명선·김미애 의원안은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라는 소득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소득요건 적용 여부는 한부모가

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의 필요성과 국가재정 부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13쪽입니다.

지급기준입니다.

박홍근·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 의원안은 대지급의 구체적 지급 대상, 지급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김한규·임미애 의원안은 지급기준이 제도의 성격과 재정 소요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임미애 의원안은 특히 선지급 지급금액 결정 방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의 직접 관련성,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금액입니다.

임미애 의원안의 경우 선지급 금액 기준을 자녀 연령이나 부모 소득이 기준인 표준양육비와 연계하여 결정하고 박홍근·김남희·황명선·서영교·김미애 의원안도 대지급 금액을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여 가구당 지원금액이 양육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선지급 제도는 현행 긴급지원처럼 국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최소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사회복지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점, 양육비에 따라 선지급금이 결정되면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부모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급기간입니다.

박홍근 의원안은 대지급 신청을, 서영교 의원안은 대지급 지급을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지급기간이 제도의 성격과 재정 소요 등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기준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황명선·김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 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명선·김미애 의원안은 선지급 신청요건에 소득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청인이 선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가 필수적이므로 선지급 신청 시 신청인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정기 지급 채권과 일시금 지급 채권에 대한 의견을 주셨었는데 정부안은 장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정기 지급 채권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시금 지급 채권을 하는 경우는 이행 기일이 도과된 경우인데 이 부분들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나중에 추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소송 진행자까지 포함하는 수석전문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소득요건에 관해서는 저희 정부 쪽 입장에서는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일정 소득 이하부터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제도 운영의 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회수율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15쪽에 지급기준·기간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과와 회수율 추이를 보면서 대통령령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급금액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양육비기 때문에 선지급 제도 취지나 실현 가능성 또 해외 입법례들의 사례들을 보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끝나셨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지급기간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개별 항목들이 여러 가지라서 검토의견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실 때 정확하게 신청 요건인지 불이행 기준인지 절차 진행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위원** 저부터 의견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기적 지급 의무인지 아니면 일시금 부분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기적 지급 의무에 한정하는 여성가족부 안에 좀 더 무게를 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과거 양육비까지 보상하게 된다면 모럴해저드 문제도 심각할 텐데 이걸 현실적으로 막기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이혼을 하고 따로 있다 하더라도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서로 공모해서 국가가 먼저 선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이런 형태로 나와 버린다면 이걸 현실적으로 검증하고 막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될 여지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양육비에 한정해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김 위원님.

○**김남희 위원** 사실 대부분 주신 의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에 있어서 소득요건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득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인데요.

몇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만약 소득요건을 두면 현재 제도와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현재도 한시적 양육비 지원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중위소득 75%인데, 정부가 선지급 제도를 하면서 중위소득 100%로 조금 올리는 건데, 그러면 대상자나 예산이나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취지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소득·재산 기준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예산 추계를 해 봤더니 한 오류십억

차이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정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소득·재산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보면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아동 양육비 회수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있고 거기서는 부모의 소득·재산의 다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선지급 제도가 필요 없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아동이라도 책임 있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게 국제협약에도 나와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소득 제한 없이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소득·재산 요건은 없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부모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액제로 가고,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하고 ‘양육비 가이드라인 고려해서 책정한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상욱 위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 같은데 사실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취지는 맞는 방향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걸 실제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재원 확보가 가능한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단 재원도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막대한 재정 소요가 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는 일단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 제도 자체가 회수 등이 전제돼 있는 단순히 복지수당하고는 다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회수를 전제로 정부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지급을 해 줘서 보호를 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추계하거나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대한 소요 재정 추계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채권 보유라든가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느냐를 보면 정부 측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추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정 추계도 예정처에서는 645억 원 듣다라고 하셨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 432억이 듣다라는, 이 간극이 굉장히 커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예산이 확보 안 돼서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부의 이러한 소중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보다 필요한 대상에 대한 부분들이 잘 파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득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제도를 운영해 본 다음에 여기서 쌓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제도 운영상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재정을 더 확보해서라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보려고 저희 정부안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와 차이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재 한시적 지급 운영하는 게 75%거든요. 근데 이걸 일단 중위소득 100%로 확대하면 한부모가족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 대부분이 선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현재보다는 더 많은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정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렵게 합의를 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마련을 해 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좌초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한부모의 양육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바라보는 저소득의 양 부모 쪽에서도 이 부분은 지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그런 서운함, 여러 가지 공감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된다면 어렵게 시행되는 정부의 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 있는 것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말씀드리면 맨 마지막에 얘기한 저소득층의 이혼하지 않은 양쪽 부모들이 이 대지급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위원장 김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정부의 지원대책, 사회복지 제도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이 이혼한 분들한테 선지급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의견을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리고 저희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대통령께서 얘기하시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이게 잘되면 정부의 성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결론적으로 왜 이걸 하고 육 먹으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몇십억 때문에 결국은 이것에 대해서 이혼하신 한부모가족 중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면, 이게 무슨 다른 기본소득 이슈하고는 전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시고 저희가 이런 소득수준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게 무슨 그런 기본소득류의 주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 결국 구체적으로 지원금액은 지금 다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알 수 없는 건데 정부가 예산 추계를 하실 때는 보통 한 가족당 얼마씩 주는 것을 전제로 예산 추계하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 내년도 예산 확보된 금액은 160억, 하반기에 시행된다면……

○소위원장 김한규 한 가족당……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한 가구당 20만 원……

○소위원장 김한규 20만 원 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재산이, 월 소득이 평균소득 100%든 200%든 그냥 20만 원씩이잖아요, 만약에 다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해서 소득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런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액을 지급하는 거지요? 물론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소득이 많은 분들은 20만 원 받으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김남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지금 정부가 생각한 대로 소득기준으로 월 20만 원씩만 주게 된다면 예산을 얼마로 산정하고 계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된다고 가정해서……

○소위원장 김한규 1년 예산으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32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년에 324억, 그러면 만약에 소득기준을 정하지 않고 지급하게 되면 대략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432억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대략 얼마 차이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1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10억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지금 소득기준이 없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576억이 소요돼서 소득기준이 있는 경우하고는 한 14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년에 140억 정도 차이가 날 거다? 그렇게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김남희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선지급 제도는 선지급이잖아요.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회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가정에서는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추가 예산이라고 산정을 하시는 것은 그 회수율까지 고려를 했을 때 산정하게 되면 추가 예산이 140억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지금도 18%인데 소득수준이 중위 100%보다 높은 가정이면 당연히 회수율은 더 높을 것이고 자신이 그 돈을 안 줘 가지고 뭔가 불이익을 받는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회수율은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시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비용이라든지 뭔가 더 골치 아파지는 것들 그리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의 한부모가정이 느끼는 소외감이라든지…… 이 정책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중위소득 75%에서 중위소득 100%로, 정말 드러난 대상이 고작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뭔가 괜찮은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할까라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혹시 외국 사례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노르웨이 사례, 사실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이 7750만 원 초과되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아 위원 그게 중위소득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7750만 원이라고……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중위소득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김남희 위원 대부분의 국가는 소득·재산 기준이 거의 없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내가 물어볼게요. 김남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일정 소득과 관계없이 줬을 때가 예산 차이가 110억 난다고요?

○김남희 위원 140억이라고 아까……

○서범수 위원 140억 차이 난다고? 단순히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처럼 어떤 감정의 문제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니, 예산과 감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되면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율은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수율이라든가 운영 성과를 보고 정부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진행시키자, 그다음에 일단 제도는 설계를 이렇게 하자라는 식으로 협의가 된 겁니다.

○서범수 위원 누구하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부처 간에 협의가 된 겁니다.

○서범수 위원 부처하고 협의…… 그러면 뭐 하러 여기 와요? ‘협의됐으니까 국회에서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이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단지 조금 공감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마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수율을 아예 생각을 안 할 것 같아. 15% 정도 갖고 지금 회수율을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방안이 뭐가 있는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이행원도 독립기관을 만들면서 전문화시킬 것이고……

○서범수 위원 만드는 건 만드는 건데 이행원에 대해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가 아무 데도 없는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금융재산 조회도 부처의 협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김남희 위원도 말씀이 이게 좋다, 일정 소득 이상 되는 분들은 오히려 회수율이 높을 수 있다, 그거 생각 안 해요? 그거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법수 위원 생각 안 해 봤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이 부분을.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일단 저희는 중위소득 100%로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견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예산 깎아드릴게요. 여가부 예산 다른 것 깎아드릴게요, 그 정도는.

○백승아 위원 아까 외국 사례 말씀하셨는데……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외국 사례 1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보여 주신 자료랑 설명이 다른 것 같아서, 여기 소득구분 여부를 보면 스웨덴하고 핀란드는 보편적이라고 돼 있는데……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요. 독일도 11세까지는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여가부 입장에서는 ‘100% 줍시다. 그 대신에 위원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여가부에서 ‘안 돼요’, 입장이 왜 그렇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신이 생긴 다음에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 양육비 회수가 어려울 걸 예상해서 신청 대상을 적게 잡겠다는 건 좀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여기서 국가 책무가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한부모가정 아동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그것도 사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20만 원이 정말 절실한 돈이지만 이 돈으로 사실 다 키울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소득을 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 개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득이 높은 곳은 오히려 회수율이 높을 테니까요, 지금 저희 간사님께서 다른 예산 깎아주겠다고까지 하시는데 좀 재고해 주시지요.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얻어서……

○서법수 위원 손들고 하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그다음에 한지아 위원님.

○전진숙 위원 제가 여가부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현재 양육비를 대체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통 이혼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당사자는 엄마가 많습니까, 아빠가 많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머니 쪽이 많습니다.

○전진숙 위원 엄마가 어느 정도, 여성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다시 할게요. 이렇게 양육비를 지금 현재 방식으로 뭔가 지원하고 이렇게 됐을 때 이를테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될 당사자, 여기에 재산의 규모, 재산 소득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런 데이터는……

○전진숙 위원 할 수가 없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 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렇지요.

자료 찾으셨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2022년도 통계에 의하면 어머니가 18세 이하 양육하는 경우가 68.2%로 70%에 육박하는 걸로 나오고요.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로 사실 소득기준으로는 한부모의 90%까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산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추계할 때는 대상이 한 74% 정도 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보여 준 것처럼 이혼을 하고도 아이들을 키우는 게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을 책임도 져야 되고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 여성의 종체적인 문제인 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정의 소득이 높다고 해서 또 낮다고 해서 그 부담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속 소득하고 밀착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소득 요건을 갖추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 근본부터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한부모가정에서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뭔가를 해 줄 수 없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걸 일정 정도 소득으로 대체를, 먼저 선지급을 해 주자고 하는 것도 맞지만 여가부에서 좀 더 폭넓게 고민을 하면 단순히 이게 소득에 관한 문제, 아이들의 이런 문제인 건지…… 이를테면 대지급 제도, 저희가 어쨌든 선지급 제도라고 하는 것에 동의해 왔기 때문에 이게 갖는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관님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단순히 양육비를 사인 간의 문제로 생각하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 양육비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는 부분들을……

○전진숙 위원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양육에 관한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고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의 관심이 덜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허나 이혼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생기게 되면 여전히 그것도 여성의 일인 거예요.

저는 오히려 남녀 차별의 문제, 성평등의 문제, 양육에 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가 하는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각각의 재산이 또 소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가부는 그런 큰 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 주지 않는 세대들도 많지요.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양육의 문제는 양 부모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사회적인 파급효과를 통해서 저는 사회문화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일정 정도 소득수준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틀을 보지 못하는 일정 정도의 한계치를 여가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아 위원 지금 이걸 모두에게 주면 그 가구 수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로 하면 몇 %까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5000가구 정도 차이 납니다.

○한지아 위원 5000가구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한지아 위원 저도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국가가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몇 명 되지도 않고 예산도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물론 부처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처음 시행되니까 제도 시행에 있어서 추이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런 것들을 타진해 가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또 저희가 국회에서도 돋고 부처에서도 이행을 위해서 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모두의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방향성이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백승아 위원 저도 비슷한데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혜택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번에도 해당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아니면 거의 다 못 돌려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부모가정에서 까지 ‘나는 여기에도 또 해당이 안 돼. 국가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국가가 나한테 해 주는 게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것 20만 원 주는 것 까지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말씀하셨듯이 여성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큰데 국가에서 이것마저도 나는 지원을 안 해 주는구나 하는 박탈감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도 차이가 적고, 처음부터 너무 방어적으로 신청 대상을 적게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원장 김한규 서범수 위원님께서 마이크는 없지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서범수 위원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백승아 위원 다 비슷한……

○서범수 위원 그런데 중위소득 100%로 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는 한부모의 한 74% 정도가 커버된다고 봤고요. 소득기준으로 하면 3인 가구로 470만 원 수준입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여가부에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아야 되겠다는 노력을 할 생각은 별로 없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제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안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제도 특성에 대한 고려를 한 다음에 데이터나 회수율 등을 본 다음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서범수 위원 여가부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닌데 일단은 75% 정도가 커버가 된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그 금액 차이가 140억 정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서법수 위원 여가부 사업비가 얼마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조 7000억…… 어떤 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법수 위원 사업비, 전체 사업비.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전체 예산이 1조 7000억입니다.

○서법수 위원 140억 정도면 전체 사업비의 몇 % 정도 되느냐고요.

여가부 사업비 전체 얼마예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1조 7000억입니다.

○서법수 위원 아니, 예산이 1조 7000억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어떤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서법수 위원 전체 여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경상비 다 빼고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비 총괄 안 나와요? 기조실에서 안 나옵니까? 인건비, 경상비 다 빼고 실제 사업하는 것 있잖아요. 제가 커버를 해 드리려고 묻는데도 자꾸……

여가부 사업비 중에 140억이라는 금액이 끊니까, 작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정의 문제로 자꾸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데 여러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기준소득을 정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그건 전혀 잘못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 항의 전화 받느라고 업무 못 해요, 이 건으로.

그리고 이게 일반인들 기준의 소득수준이면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주느냐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부모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사회적 약자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 이름 자체도 그냥 구분하지 않고 한부모가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가부가 업무의 편의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구분해서 490만 원 소득인데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의 항의를 받고 이러면서 오히려 이런 좋은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욕먹느라고 일을 못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씩 지금 빨리빨리 넘어가자……

○김상욱 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사실 지금 위원님들 말씀과 차관님 말씀 들으면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늘 화두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국가가 양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양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의 어려운 부분에 국가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는 것.

그래서 지금 차관님께서 당연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충분히 듭니다,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실행 부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까지

기존에 했던 제도와 또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감 있게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이게 기본적으로 대지급이기 때문에 기지급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양육자가 양육 책임을 회피하는 비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먼저 선지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비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비양육자에게 모두 다 구상하는 형태로 강화된 법 개정도 차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 금액을 자꾸 줄여 나가기보다는 지급 대상도 확대해 나가고 금액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되 회수 방법을 강구해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 법안 관련해서 사전·사후로 제가 정부 측 입장은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여당 쪽 위원이기 때문에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들어 드리고 싶은 생각이지만 이 문제만큼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한부모가정의 양육에 관해서 만큼은 정부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말씀을 올리고요.

이 말씀 올리기 전까지 제가 고민을 좀 길게 했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성가족부에서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관님 말씀 더 해 주시면 저도 참고해서 생각을 더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죄송한데 시간상 이러면 통과 못 해서 이것 말고도 세부항목이 있으니까 하나씩 걸러낼 것을 걸러낼게요.

11페이지 보면 신청요건부터 얘기가 있는데요. 일시금하고 정기금 이슈가 있어요. 제가 일시금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일시금 빼고 정기금으로 가지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할게요.

그다음, 서영교 의원님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 불이행한 경우 이런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당한 사유가 뭐냐는 다툼이 있으니까 이것도 빼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얘기를 할 때 이견이 있으면 위원님들은 얘기를 해 주세요. 김한규 의원 안인데 꼭 지켜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좋습니다. 그 얘기도 없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절차 진행 여부는 세부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하면 법 11조에 보면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 법률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 이런 것들을 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대지급 신청을 하는 건데 거기마다 더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두자 이렇게 하는 건데, 김미애 의원님하고 황명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건데 저는 이거 수용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상욱 위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야 의원님들 다 한 분씩 내신 거고 특별히 제한을 둘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법을 보니까 거쳐야 될 절차가 예시처럼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을 두는 것은 크게 권한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김미애·황명선 의원안처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요건이지요. 지금 이게 쟁점인 거고 이것 잠깐만 보류하고 뒤의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급기준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게 대부분이고 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이미 있어서 이것을 활용하자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싸울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다수의 안에 따라서 그냥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금액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급금액은 가구에 따라서 달리 금액을 정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냥 20만 원으로 염두에 두고 계신 금액을 어떤 기준을 고려해서 산출해 낼 거냐 이것의 문제인 거지요, 여가부에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을 보면 공통된 것들이 죽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소득인가요? 소득을 넣어야 된다라는 분은 없잖아요. 부모 소득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분은 없는 거지요? 여기 13페이지 하단에 부모 소득 얘기가 나와서……

○김남희 위원 아마 지금 법안에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양육비 가이드라인이 소득에 따라서 양육비가 산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게 구속력을 가진 건 아니고 그냥 고려하라는 취지니까, 그렇다고 소득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해야 된다는 취지로 읽히지는 않아서 넣어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득에 따라서 절대 더 주시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양육비를 받아야 될 그분이 소득이 많다고 더 주고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정부 기준으로 해서 100% 이하라고 해서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지요, 소득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오케이.

그러면 다수의 의원들이 만든 대로 예를 들면 이 자리 앉아 계신 김남희 의원님하고 여당에서는 주로 김미애 의원님 안이 대표적인 안인데 동일한 것 아닌가요? ‘대상’ 자만 빼진 건가요? 선지급의 대상, 대상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신 거지요, 김남희 위원님? 저도 이게 만들어 놓고도 헛갈려서……

○김남희 위원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세 분이나 대상을 넣으셔 갖고 대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넣을지를 판단하는데 혹시 조금 이따 논의할 때까지 생각나면 말씀하시고 일단은 대상은 빼고 이것은 김미애 의원님 안처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급기간에 ‘성년에 이를 때까지’가 들어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차피 다 성년에 이를 때까지 아닌가요? 양육비를 성년이 넘어서도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지금 한시적 긴급지원은 18개월이 최대기간입니다. 그래서 대지급을……

○소위원장 김한규 그거야 한시적이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대지급이라는 것은 법이 있는 한 계속 지급하는 거잖아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이상. 그러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이것은 좀 불필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없어도 되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은 빼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에 15페이지 하단에 동의 서면 제출의무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것은 소득기준을 넣으면 100%가 넘는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거지요. 그것은 세트로 판단하면 되고 만약에 소득기준을 넣게 되면 자기가 소득이 얼마인지를 필요한 서류를 내는 건 맞으니까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을 하고 넘어가지요. 지금 보니까 표결하면 소득기준 폐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가부가 법사위 가서 반대하면, 법사위에서는 제2소위로 넘기면 정부 부처 반대하면 통과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여가부가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법사위 가서는 여가위 안에 대해서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정부 부처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재정 부처가 불편해 하는 건 맞는데 이건 다른 명분다 떠나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인데 그걸로 밀어붙여서 그리고 여가위원회의 여러 가지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하면 정부 부처도 양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차관님, 끝까지 반대하셔야겠어요? 저희 비밀투표해 갖고 표결할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원님들 제안해 주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잘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회수를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는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태에서 소득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법안은 오늘 논의 안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더 이상 논의 안 합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래도 이 제도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면 딥페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지아 위원 차관님, 이것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차이가 크지 않고 회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또 정교하게 고민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없던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그 부담감은 알겠지만 이 법안이 안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가부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질타와 비판을 받는데 이런 것들은 140억의 차이라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그냥 가자라고 해 주셔도 여가부로서도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향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안 갈 수가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가부가 동의 안 한다고 저희가 통과 못 시키는 게 아닌데 저희가 이것은 여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기준 폐지하는 걸로 통과를 하고 그다음 논의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가부는 이 법안 마지막 최종적으로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하시면 회의록에는 남기겠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의견 있는 것 다 포기하잖아요. 소위 위원장인데도 지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고민을 나름 다 했던 거예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포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소득기준은 넣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신청자가, 채권자가 자기 소득기준에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도 불필요하니까

그것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각 의원안은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결정주체, 결정기한이나 서면 통지 여부를 법에 명시하였는지 여부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박홍근·김남희·황명선·김미애·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이행관리원장이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행관리원장을 주체로 한 법안은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대지급까지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이행관리원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효율성과 지원 신청자 등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이며, 반면 여성가족부장관을 주체로 한 법안은 대지급은 국가재정으로 지급되고 지급금 회수 및 징수란 침익적 행정행위를 행하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 기본권 침해 정도, 이행관리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32쪽입니다.

결정기한, 서면 통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청인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결정기한이나 서면 통지는 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결정기한은 선지급을 위한 소득, 자료 등의 조사 등 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31쪽의 결정주체는 저는 이행관리원장으로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32쪽의 결정기한, 통지의 검토 부분은 30일로 법에 명시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상욱 위원 다수 의견처럼 이행관리원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분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여가부장관님이 안 하신다고 하니까 이행관리원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차 관련해서 서면 통지 이것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것도 김미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안인데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37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 도입에 따라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영교·박홍근 의원안은 심의위원회나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미애 의원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 여부 결정 시 적용할 기준을 심의위원회가 마련하도록 하며, 김미애 의원안은 이행관리원장이 선지급을 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선지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만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기준 및 선지급 결정 변경·취소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마다 대지급 결정 과정에서의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달릅니다.

대지급(선지급) 제도 운영의 공정성·객관성·형평성 측면에서 지급기준은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재량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바 선지급 결정 시 재량의 여지를 없앨 경우 다수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크지 않다는 점, 대지급 제도는 한부모 가족이 양육비를 신속하게 확보하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선지급 여부 결정 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선지급 지급기준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하도록 할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다수 위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급기준과 관련한 대통령령 마련 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격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 운영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보다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는 그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두 가지 사항 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지금 심의위원회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현재는 제일 큰 역할은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 불이행한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이 있고요, 양육비 정책 결정 관련해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지금 여성가족부 입장은 심의위원회는 지금처럼 제도개선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이번의 양육비 대지급 관련해서는 이행관리원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지급 결정해서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 이런 입장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저는 원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건 아니고 위원회가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육비 관련해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제 의견은 시간상 철회하겠습니다, 지금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민간 위원들도 많이 참여하는 실무기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신속하게 선지급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없으시지요? 저만 법안이 달랐기 때문에 넘어가고.

전문위원님, 다음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3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에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삭제하고 양육비 대지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성가족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47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긴급지원은 폐지하므로 긴급지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부칙과 관련하여 기준에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자의 권리 보호 및 지급된 금액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는 필요하다고 보이며, 대지급과 긴급지원을 중복해서 받지 않도록 선지급을 받으면 긴급지원은 종료하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 수용하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그러면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해서 이걸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3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자료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금융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6개 개정안은 대지급의 경우 현행 긴급지원 제도와 동일하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나 신용정보·보험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조회 대상에 금융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신속히 파악하여 양육비 환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양육비 대지급 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으나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양육비 환수율 제고를 통한 국가재정 부담 경감 및 제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4쪽, 왼쪽 하단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자료 및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육비 대지급과는 관련 없는 일반적인 채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측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15조에서 약칭을 둘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55쪽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에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법원행정처는 들었고 여가부 의견을 구두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개정안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에 대책 마련 시에 금융위 등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한 실효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급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미 다른 법령에서도 유사한 법체계를 활용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가 기초연금법 등 복지 관련 다수 법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라는 입법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제도의 회수율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개정안으로 수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다른 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실명법의 체계가,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 얘기가 일견은 맞는 게 금융실명법을 만들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들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이 법에다가, 금융실명법에다가 그 특례들을 초반에는 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금융실명법의 예외, 예를 들어서 감사원법,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상속세법 이런 게 죽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법 이런 게 죽 들어 있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게 법원행정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가부차관님 말씀대로 그 이후에 금융실명법에 들어 있지 않은 특별법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다른 특별법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격한 의견을 주는 건지, 법사위에 가서도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사위원들이 되게 불편해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견은 맞아 보이지만 현실은 우리가 만들려는 법하고 같은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여가부가 그 사례들을 많이 뽑아 오셔 가지고 법사위 전에 법원행정처에다가 드리고 법사위에서 심의할 때 의견을 좀 수정해 주십사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법수 위원 차관님,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자료 제공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어떤 조치가 있지요, 그 후속 조치는? 예를 들면 금융자료를 받았다 칩시다. 여가부에서 그다음 조치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이 되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서를 다시 발부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서 환수조치에 들어갈 겁니다.

○서법수 위원 환수조치 어디서 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이행관리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환수조치를 어떻게 하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지금도 한시적 양육비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를 하고 있고요.

○서법수 위원 얼마나 했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산이 있다, 환수조치를 하겠지요.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환수율이 지금은 한 15%……

○서법수 위원 15%라는 건 아는데 그건 냈을 때 이야기고. 우리가 금융정보를 받았다 칩시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의를 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했다 칩시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지금은 저희가 금융정보를 못 받아서……

○서법수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면, 동의를 했다 칩시다. 그 이후에 여가부에서 어떤 후속조치가, 필요한 후속조치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거지요. 그냥 금융정보만 받으면 됩니까. 그다음 후속조치해야 되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그동안은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소요돼서 채무 불이행자들이 재산 은닉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을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

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맞춤형 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관리원이 독립기관화되는 목표가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서범수 위원 이행관리원이 뭘 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금……

○서범수 위원 운영하는데 내 이야기는 어떤 수단이 있느냐고, 이걸 받아 내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있느냐고.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해하시면 지금 이행관리원의 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말씀하세요.

자꾸 여가부는 이야기가 ‘맞춤형 이행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거든요. 그 이행수단이 뭐가 있느냐고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이미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예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예금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및 부동산 압류 이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의 경우에는 은행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 은행의 채무금액이 200만 원이면 50만 원씩 몇 개 이렇게 투망식으로 던져서 일단 돈을 확인해 보고 돈이 없으면 압류한 후에 다른 은행에 다시 투망식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든요. 예금을 압류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번 잘못된 압류가 들어가면 이미 재산은 은닉돼서 다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금융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적시에 필요한 돈을 압류할 수 있도록……

○서범수 위원 이행원에서 그 조치가 가능합니까?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 예,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이 앞부분에 대해서 의견 없으시면 그 뒷부분, 54페이지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 거지요? 채무자로부터 동의 서면을 받으라는 것은 양육비 대지급하고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채무자 재산 확인할 때 얘기입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런데 어차피 동의 안 하면 확인도 못 하잖아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동의 서면이라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제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전자문서를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서면에.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동의 없으면 확인을 안 해 주는 건데 동의를 받으라는 의무를 이렇게 법에 두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무익적 기재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없으면 넣은 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73쪽입니다.

선지급 신청인 등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및 금융정보 등의 요청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이 조항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신청인하고 대상자에 대한 거지요, 이것은 채무자에 대한 게 아니라?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소위원장 김한규 여기서의 대상자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대상자? 법안의 대상자가 뭐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네. 21조의6안에 보면 ‘선지급 신청인 및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거나 받도록 결정된 자’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양육비 채권자네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죄송합니다. 예, 채권자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부부 중의 한 분. 그러니까 신청자하고 받을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신청인 및 대상자로 돼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앞부분에 저희가 소득수준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수준 관련된 조항이라 불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그래도 양육비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조사 근거조항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행 여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보겠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꼭 집에까지 가서 보셔야 돼요, 주거 등에 출입해서? 이혼하신 분한테 당신들이 양육비 달라고 청구하는데 알고 보면 집에 돈도 많고 이렇다고 들어가서 봐야 돼요? 주거 출입을 해야 돼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꼭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굳이 그럴 필요…… 주거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제외해도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것은 빼고 ‘소득·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87쪽입니다.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각 의원안은 선지급의 중지, 반환, 취소·변경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하단입니다.

해당 내용들은 신청 당시 하자가 있거나 지급 이후 사정 변경이 생길 경우의 처리 방식으로서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로 판단됩니다.

다음, 7개 의원안은 모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아 환수할 때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인정되나 양육비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과 부정수급액에 대해 감경규정을 둔 입법례는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미애 의원안은 선지급금이 오지급된 경우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부정수급자 반환금액 면제·감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겠지만 양육비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법에서도 부정수급자 징수에 대해서 재량적 규정을 두고 지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유연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87쪽의 오지급한 선지급금 반환 명령에 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필요하다고 의견드립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저는 여성가족부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사회보장제도에서 유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설사 잘못 지급되거나 그런 경우라도 복지제도의 취지상 갑자기 환수를 하게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타격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약간 궁금한 거는 과지급된, 과오지급된 경우에도 면제·감경 그게 적용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김남희 위원 왜냐하면 과오지급의 경우에는 수령자에 귀책사유가 없는데, 정부가 잘못 지급할 수도 있는데 개별 가구에 힘든 사정이 있는데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면제·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결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또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죄송한데 저는 이것 조문들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 볼게요.

중지하는 것, 선지급을 하다가 중지하는 사유, 그러면 이것은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선지급할 필요가 없는 건 맞겠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김미애 의원안이 뭐가 더 들어간 거지요?

이것은 자료 제출 거부, 조사 이행…… 소득기준 초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빼기로 했고 자료 제출 거부했다고, 어떤 자료 때문에 중지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중지라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지급 사유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신청이 계속되지 않은 결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문구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의원님 안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조사 방해 뭐 이런…… 너무 굳이 이렇게 엄격하게 안 해도 되고 실제로 이런 사유가 나오면 법 개정할게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근데 실제로 타 제도의 경우에도 조사 방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게……

○소위원장 김한규 이건 중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먼저 대지급하다가 실제로 어떤 경우에 조사를 더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이미정입니다.

저희가 실제 한시적 양육비 같은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가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 채무자의 말과 채권자의 말이 일치하지 않거나 이래서 자료가 필요할 때 저희가 입금내역을 요청한다거나 하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곤란함이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소위원장 김한규 협조하라고 설득하고 안 그러면 지급을 하는 게 부당하지 않냐라고 해야지 그냥 ‘당신도 협조 안 하면 돈 안 줘’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법에 이렇게 굳이 냉정하게 넣어서 하셔야 돼요? 해도 그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가 여기서 소득기준 초과만 빼면 되겠네요. 정부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소득기준 초과만 빼고 그러면 김미애 의원안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까 오지급된 것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은 김남희 위원님 말씀하신 건 아까 과오지급 때도 반환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셔서 두 개가 다른 얘기 아닌가요? 김미애 의원안은 그 경우에도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고 김남희 위원님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놔두라 이 말씀인가요?

○김남희 위원 아니, 저는 지금 반환에 근거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반환받는 금액에 대해서 면제 또는 금액 감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는 건데 오지급의 경우에도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넣어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취지인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다르지요. 반환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와 반환을 할 때 그 반환을 감경이나 면제할 수 있는 거냐가 약간……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면제를 하는데……

○소위원장 김한규 과오지급의 경우에도?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김남희 위원 면제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하자?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위태롭게 할 경우가 없는 경우는 반환을 받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네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전문위원님하고 여가부 생각이 좀 다른 거잖아요, 부정수급의 경우에.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님은 그 경우도 다 돌려받아야 된다는 거고 여가부는 오히려 부정수급을 했지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위태로운 경우……

○소위원장 김한규 채권자의 사정이 그러면 그 경우는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여가부 의견대로 하지요.

위원님 팬찮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0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개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회수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육비 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함에도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하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양육비의 원활한 회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104쪽 왼쪽입니다.

임미애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는 선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저소득층인 양육비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취지로 보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부처 의견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 위탁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 체납도 증가하여 행정력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세청 위탁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부분과 채무자 대상 회수금액 면제·감경 부분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슈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거냐, 105페이지 보시면 민사 절차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나오는데 당연히 국세 강제징수 절차가 훨씬 더 간명하겠지요.

그런데 이거하고 국세청에 위탁하는 건 별개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박홍근 의원님은 국세청에 위탁하자는 것까지 얘기하셨는데 국세청은 반대하고 있고, 국세청이 반대하면 이것은 위탁이, 현실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이견도 없고,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신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임미애 의원님이 돈을 안 주고 있는 채무자가 저소득층이면 회수하지 말자 이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들? 이것은 결국은 정부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저는 이것은 약간 징벌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위자료 결정할 때 채무자,

그러니까 위자료 지금 의무자의 재산 상황도 다 고려해서 법원이 지금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면제 기준을 안 정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

○**김상욱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은 굳이 면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더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개 의원안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기한을 30일로 규정하여 행정기본법의 예외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신청 통지기한 외에 다른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차이가 있는 것은 박홍근·서영교 의원님이 이의신청하고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결국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요? 선지급 처분에……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아닙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동일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행정기본법에 그 내용이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내용이 같으면 행정기본법에 따른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법 자체가 또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연동되려면 그것에 따른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5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개의 의원안은 양육비 선지급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선지급금을 받을 권리 모두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돈을 받았어요. 선지급금을 받았어요. 내 통장에 들어가면 일반 돈하고 혼화되는데 그것만 압류를 안 하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요? 채무자가 압류 과정에서 이의신청해서 이것은 내가 매달 20만 원씩 받은 거니까 이 20을 제외하고 압류해 달라고 해서 집행 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겠네요? 변호사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법수 위원** 방법이 있나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별도 통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의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섞여서 어떻게 압류를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지요, 뭐. 나중에 법원에서 골 아파할 것 같기는 한데……

○서범수 위원 별도 통장을 만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규정을 하나 두면 안 되나?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요즘 통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번거롭고 20만 원 받으려고 통장 만들라고 하면 또……

    알겠습니다. 제 의견 포기하겠습니다. 제 의견 포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시간 관리상.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17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황명선·김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는 당연히 동의하겠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시스템에 9억 4000이나 드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게 저희 여러 가지 사회관계의 그런 정보 자료까지도 끌어와서 그 자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들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신청자가 접근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가부 내부에서 그냥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이행관리원의 내부 시스템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것은 혹시 정부 부처하고는 아직 얘기 안 해 본 건가요, 이 예산은?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아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은 일단 동의하고요. 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도 협의를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근데 개인적으로 하나…… 이행관리원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행관리원에서 법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변호사분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보니까 작년 국감에서도 이행관리원 변호사를 보수가 되게 적어서 이슈가 되고 그랬는데 최근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은 뭔가 조율이 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계속 재정당국에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일단 9명을 증원을 하는 걸로 했고 처우개선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결위 때 다시 한번 그 부분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22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 의원안은 양육비에 관한 상담·면접교섭·법률지원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확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등에 필요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과도한 수수료 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김미애 의원안처럼 수수료 면제대상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실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석전문위원이라는 게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자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금융위원회가 그런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결국 통보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은 다 수익자 부담으로 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 까지 면제해 버리면 사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서 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27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7개의 의원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이 범죄의 태양이나 죄질에 따라 다양한 형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류, 과료까지 별 치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 황명선·김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 경우는 앞에서 소득요건을 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금융정보 등’으로 돼 있어서, 그러면 다른 정보가 대체가 돼야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개인정보의 경우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면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렇긴 한데 개인정보로 하게 되면 5년 이하 너무 센데…… 하여튼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일단 부정수급자 관련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

니다. 그리고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 등의 목적 외 사용 조항에 관해서도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상욱 위원** 말씀처럼 너무 센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니까요. 금융정보면 그럴 수 있는데 ‘금융정보 등’이라고 돼 있어서 이 법에 ‘금융정보 등’은 보니까, 17조에 신설되는 거군요. 금융정보 말고 무슨 다른 정보가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신용정보, 가족관계 관련 정보……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신용정보와 보험정보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것은 다른 법하고 비슷하니까 약간 빠지더라도 그냥 일단 놔두지요.

○**서범수 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도 ‘등’으로 돼 있나요? 똑같은 표현인가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금융정보를 받을 필요가 있어서 금융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김남희 위원** 아니요, 지금 얘기하신 이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이것은 양육비 채무자 관련된……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요, 신청인이잖아요. ‘신청인 등’에 채무자도 들어가나요?

○**김남희 위원** 아니요, 이 별칙조항은 채무자에 대한 거예요. 17조 5항을 위반해서 들어간……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신청인 등’에 채무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신청인 등’의……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한부모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서범수 위원** 다 비슷해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그렇게 가지요. 알겠습니다. 실제 사례는 ‘이하’니까 그것은 양형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전문위원님 다음 것 말씀하세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1쪽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집행권 원 확보 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요청 자료와 요청 대상기관을 모두 명시하고 자료 요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동일하다라는 건 표현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개정안을 수정 수용하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법원행정처에서 요청 대상기관을 한정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그 서류만 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좀 비현실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슨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다고 행안부에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것 같은데 법조인들은 생각이 너무……

그러면 하여튼 바꾸지요,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팬참으시지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넘어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39쪽입니다.

김한규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용으로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건 별것은 아니고 하여튼 채무자들 재산에 저는 요즘 가상자산 빠진 것들 다 찾아서 그냥 넣고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그래서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41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24년 3월 26일 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의 제재요건 중 감치명령 결정을 이행명령 결정으로 완화하였고 개정 내용이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치명령 결정은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불이행 시 이루어지는 것인바 행정제재 대상에서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외된 부분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142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 의원안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소요시간 감축 등 지원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김남희·황명선 의원안은 부칙에 제재조치 대상 확대와 관련 적용례로 이 법 시행 이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첫 번째, 행정 제재조치 요건 확대하는 부분은 수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재조치의 일부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탁하는 부분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동의합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 개정된 것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첫 부분은.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 서법수 위원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무슨 의미가 있지요?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한 제재수단으로 사실 계속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현행도 있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현행도 있는 사항입니다.

○ 서법수 위원 현행도 있어요?

○ 소위원장 김한규 예, 그런데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 김남희 위원 미국에서 되게 잘 쓰여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양육비 이행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예요.

○ 소위원장 김한규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웃음)

다음.

○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48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 의원안은 명단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주는 소명기회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김남희·김미애 의원안은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황명선 의원안은 14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단축하여 명단공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명단공개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조세 체납의 경우 6개월 이상, 임금·대금 체불 시 명단공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는 점과 양육비 이행 및 이행계획 제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축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의 절차 지연을 방지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다른 제재조치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명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수용합니다.

○ 소위원장 김한규 어떠신가요, 위원님들?

솔직히 감이 잘 없어서 이것을 10일로 바꾸면 채무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할까요? 현재는 소명기회를 주면 보통 3개월 다 맞춰서 내겠지요. 빨리빨리 내지는 않겠지요? 소명서 준비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인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기록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이전에 이행명령이라든가 이미 절차들을 계속 밟아 오신 상태고 저희가 이 처분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를 드려서 일단 10일 이상으로 규정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 앞에 다른 처분들을 죽 받다가 그것도 안 할 경우에 명단공개를 하는 거니까 그전에 이미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걸 알고 있는 분이다 이거지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진숙 위원 여가부 안을 받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좋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50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김미애·서영교·임미애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동일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53쪽입니다.

김남희·황명선·서영교 의원안은 형사처벌 요건을 현행법의 감치명령보다 앞 단계인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민사채무에 대한 불이행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예외적이라는 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영역이라 구성요건을 통일할 필요가 적다는 점, 별처 대상을 이행명령 불이행으로 할 경우 기존 감치명령의 대상자에 포함되었던 담보 미제공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법원행정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의 전치절차 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진 이행명령 결정을 근거로 하여 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비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입법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9월 27일부터 제재조치 요건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므로 양육비 이행률 제고에 미치는 성과 등을 본 다음에 이 형사처벌 요건에 대한 개

정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재조치 완화라는 건 감치명령 결정을 이행명령 결정으로 해 가지고 운전면허 정지 이런 것들이 더 요건이 완화됐다 이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감치명령 없이도 이행명령만으로 제재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김남희 위원 여가부 입장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좋습니다.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뭔가 계속 처벌요건을 강화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가 있기는 한데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면 이것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조금 더 논의하지요, 다음 법을 또 개정할 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56쪽입니다.

법률의 시행일입니다.

박홍근·김남희·황명선·서영교 의원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김미애·임미애·김한규 의원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여가부는 7월 1일부터 하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저희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법 통과가 언제될지 모르는데 7월 1일부터로 하나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가 그 대책을 만들고 하반기부터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 때 이 법 통과되는 겁니까? 보통 법 통과 후 1년 내지 6개월이지, 왜냐하면 본회의 통과가 미정이잖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러면 그렇게……

○소위원장 김한규 법사위에서 잡을 수도 있잖아요.

○서범수 위원 오늘 소위에서 통과될 줄 알아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는 제도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부모가족들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남희 위원 지금 취지는 제도 시행을 원하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니까……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공포 후 1년이든지 6개월이든지 해야지.

○김남희 위원 그런데 공포 후 1년으로 하게 되면 너무 늦어지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걸 정기국회 때 만약에 빨리 통과시키면 7월 1일이면 오히려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여당에서도 김미애 의원님이 6개월 생각했던 거고 6개월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김남희 위원 6개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시스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소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서법수 위원 그게 9억 얼마짜리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그 준비 기간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하반기로 잡은 거라서 6개월은 사실 빨리 개정된다면 저희가 준비기간이 촉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정도로 해 주시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차라리 공포 후 1년으로 해 주셔야지 저희가 준비기간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냥 7월 1일로 할까요?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나? 7월 1일이 의미도 있어요, 제 생일이기도 해 가지고.

그런데 원래 정부가, 여당이 6개월 얘기하셨다가 갑자기 더……

○전진숙 위원 7월 1일이면 여성주간이 끼어 있기도 하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여성주간은 9월로 바뀌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7월 1일로 하고 대신에 법사위에서 안 막히게 최선을 다하시는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7월 1일로 하고 빨리 통과할까요?

○서법수 위원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한규 통과 안 될 것 같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러면 7월 1일로 정리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한규 예, 7월 1일로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59쪽입니다.

송옥주 의원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경제상황 등의 변화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을 도모하는 한편 법원이 양육비 결정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구체적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인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양육비 산정기준을 작성하여 판결, 심판 등에 활용하도록 할 경우 구체적 사정에 맞는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60쪽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양육비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법원이나 양육비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하므로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수석전문위원님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혹시 법원에서 산정기준표를 만들 때 여가부에다가 자료 요청을 하거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않고요. 저희가 가끔씩 연구용역을 하면 법원에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법원도 저희 자료보다는 보사연의 소득 관련 자료들을 더 많이 활용하신다고 현재 얘기하십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서법수 위원 물론 신중 검토하는데, 양육비 가이드라인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소득기준에 따라서 자녀를 양육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자료 161쪽에 보시면 법원이 정한 양육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이것 만들어도 법원이 전혀 참고 안 해 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당사자들이 참고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당사자들도 법원의 양육 기준표에 따라서 합의하거나 그럴 때 참고하지 않나요?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이것은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거고요. 법원들이 그래도 많이 참고한다고 들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만약에 의원님이 낸 안처럼 법원이 이것을 기초로 한다면 좋은데 법원이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법의 의무로 부과를 하면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부정적인데, 어떠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통과 안 시키는 것으로……

그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다음 내용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부분에서 저희가 이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심사할 필요성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이게 18개월이면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9개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한시적 긴급지원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선지급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그전까지는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예, 그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이 조항은 없어도 되겠네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그전까지라도 연장을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저희도 개정안의 규정은 없어도 된다고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7월 1일이 될지 아니면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해서 1년 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긴급지원제도가 유지되려면 연장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지금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될 건데 이것은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선지급하고 중복되고, 선지급이 도입되면 이 규정 자체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도의 연장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주는 기간을 연장하자는 거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예.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어차피 중복되는 건 앞에서 다 거르기로 했잖아요. 앞의 조항에 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전까지는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예산을 또 추계해야 되는 문제는 있겠네요? 저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들……

○전진숙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당사자에게 지금 현재 12개월 주는 거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습니다.

○전진숙 위원 그렇지요, 12개월. 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시행되기 전까지 12개월이 이미 끝나 버린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내년 1월에 12개월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법은 내년 7월부터 되게 되면 2월부터 6월까지 비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부처에 시행이 7월 1일 자로 되어 있어서 선지급이 7월 1월부터 본격 도입이 되면 크게 의미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전진숙 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몇 개월이 비잖아요.

○소위원장 김한규 그래도 몇 개월 중간에 끝나는 분이 있잖아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지금 송옥주 의원님 안 자체도 7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예,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7월 1일이 맞는 것이기도 하네요, 중복되지 않게.

그런데 7월 1일 시행해도 그때부터 바로 받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약간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더 늘릴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포함 안 시키는 걸로 의견 모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러면 더 이상……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정부 입장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신 부분입니다.

소득기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0%로 가져온 부분을 폐지하는 안으로 의견 모아 주셨는데 저희가 부처 간 이견이 있으면 법사위 통과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처 의견을 수렴할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1년 드릴까요? 1년 드리면 이것 통과 안시키고 천천히 할게요.

○서범수 위원 죄송한데 차관님, 이런 게 있으면 여야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설명을 하든지 해 줘야지 우리한테도 한번 안 하는데 야당 위원님들한테 한번 갔겠어요?

○소위원장 김한규 저한테는 오셨습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왔어요? 한번 가 보세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 부분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 측 입장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지만 또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서범수 위원 충분히 설명을 우리한테 했다고요? 왜 이러세요? 나한테 한번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했어요, 이야기를?

○여성가족부가족정책관 최성지 죄송합니다.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가 보좌진하고 비서관님들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는 직접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런 쟁점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미리미리 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야 정부 측 사정도 알고 이걸 지금 정부가 극구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해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하고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어떤 타협점이 있느냐, 다른 어떤 안이 있느냐, 이걸 서로 의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불쑥 이걸 갖고 나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차관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아예 정부 측 무시하고 그냥 위원들 의견 딱 받아서 통과시킬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시간을 주시면 다시 한번……

○서범수 위원 얼마나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빠른 시일 내에 설명드리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설명을 드린다는 건 저희한테 설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각 기관이나 부처……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부처 협의도 하고 위원님들께도 말씀……

○서범수 위원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좋은 안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지아 위원 저희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그런데 지금 쟁점이 딱 하나잖아요. 게다가 내년 7월부터 하면 1년 치 예산도 아니고 반년치 예산만 필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7월 1일부터로 안 하고 시행 일을 1년부터 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정부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은 한 오류십억밖에 안 들 수 있어요, 내년 기준으로 치면.

그런데 지난 21대 말부터 해서, 전임 여가부장관부터 해서 이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계속 와서 얘기를 하셨던 거고,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1번 안으로 넣은 거잖아요. 저희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몇십억 때문에 지금……

오늘 언론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이것하고 딥페이크 법안 통과시키는지 오전부터 언론들이 다 취재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몇십억 안 주겠다고 해서 통과 안 시킨다라고 하면 이 비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은 법사위에서 논의할 때까지 협의를 하세요, 기재위랑.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수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여당 위원님들도 위원장님이 여당이시니까 만약에 정 논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전체회의 때 잡으세요.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며칠만 더 시간을 줍시다.

○소위원장 김한규 아니, 그런데 법안소위는, 여가위는 며칠 후에 다시 못 잡아요.

○서범수 위원 한 번 더 잡으면 되지요. 추석 쇠고 한 번 더 잡지요, 추석 쇠고.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것 만약 오늘 통과 안 되면 그리고 통과 안 되는 게 여가부에서 이걸 발목 잡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게 되면 이 제도를 약속한 대통령은 어떻게 되고 정부가 이런 걸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들이 다 무의미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데요. 비판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가족정책관입니다.

저희 차관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고 저희가 환수라든가 소득·재산 조사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사실은 저희는 회수율 추이를 보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조건하에서 이 제도 도입이 결정이 된 거라서……

○김남희 위원 예산의 문제가 아니면 더 큰 문제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복합적이라는 말씀……

○김남희 위원 그러면 여성에 대해서, 여성이든 어쨌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자체가 왜 도입되어야 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제도가 왜 도입되어야 되는 건데요? 한부모가족 아이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것은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건데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 초창기에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정부의 방침이었고, 지금 아주 저소득층은 저희가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 잠깐만요, 정책관님. 지금 말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예산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렇지요?

○여성가족부기족정책관 최성지 예산만의……

○전진숙 위원 다른 모든 것을 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진행되는 사항에 있어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뭔가를 조사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실무적인 일이 많거나 이런 걸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과도한 오해를 받게 되십니다,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그

---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실제 여기서 사용되는 전체 예산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상에서 계속 속도를 내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뭘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추이를 어떻게 보시려고 하는지 이해도 안 돼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이게 제도만의, 그러니까 재정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도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돈을 먼저 주고 그걸 회수를 해야 되는……

○전진숙 위원 그 대상 자체가 어쨌든 신청을 하게 되면 진행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10명을 하든 15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이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체계를 갖추면.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저희도 조심스럽게 제도에 접근할 수 밖에……

○전진숙 위원 그래서 그냥 더 폭넓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가지 않는 길을 여는 더 큰 포지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법수 위원 차관님, 대충 다 무슨 뜻인가는 아시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서법수 위원 물론 여가부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보면 딥페이크 논의는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한다면 추석 쇠고 한 번 잡아 가지고……

○김상욱 위원 가까운 날 법안소위 한 번 더 열어서……

○서법수 위원 이것하고 딥페이크법을 같이 한 번 더 논의하는 걸로, 이것은 며칠 좀 봅시다.

○소위원장 김한규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과시켜도 여가위가 여당 위원장이라 상정을 안 시킬 수도 있어서 되도록이면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 느낌에는 여당 전·현직 간사님이 어떻게든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으니 그러면 저는 이 두 분을 믿고 힘드시겠지만 추석 직후에 여가위 소위를 한 번 더 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논의됐으니까 추후로 더 논의하지 않고 양육비는 그 부분만 딱 논의를 해서 정기국회 때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는 일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보류하되 딥페이크도 제가 보니까 이견이 약간 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10분만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은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추석 후에 통과시킬 수 있는 쟁점은 조금 현출을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논의 자체를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논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8건은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우선순위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68)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276)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01)
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393)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436)

(12시21분)

○소위원장 김한규 그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9항부터 14항이니까 그다음 자료 보시면 되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내용을 짧게 설명해 주시고 주로 이견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쪽입니다.

이인선 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명시는 제7조의3에서 삭제지원 주체에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경우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명시는 현행 제4호에서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지원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와 병렬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하기보다 ‘일상회복 지원’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잠깐만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분량이 많지 않아서 조금 시간 주시면 다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전문위원이 그냥 전체적으로 죽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정부 의견은 다음에 들어도 되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훑는 게 오늘은 중요한 것 같아서.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5쪽입니다.

이해식·서지영 의원안은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삭제 권한을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6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주체인 국가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삭제지원 주체를 장관으로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

나 다수 부처가 삭제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인선·김남희 의원안은 삭제지원 대상에 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포함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신상정보의 범위와 관련하여 김남희 의원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인용하고 있어 살아 있는 사람의 신상정보만 삭제지원의 대상이 되고, 신상정보 삭제지원은 제7조의3 1항부터 5항까지 모두 연관된 내용인데 이인선 의원안은 제1항에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의 범위는 이인선 의원안과 같이 규정하고 김남희 의원안과 같이 제7조의3 1항뿐만 아니라 2항부터 5항까지의 조항에서도 신상정보를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입니다.

전진숙 의원안은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방식은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범죄경력 확인 및 인적사항 요청 대상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를 추가하고 범죄경력 자료는 범죄경력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도록 구체적인 자료의 범위와 요청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서지영·이인선 의원안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에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센터의 설치목적 및 업무에 신상정보 삭제지원을 명시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를 시·도지사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제7조의3과 관련한 피해 예방 및 지원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서지영 의원안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의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종사자의 보수교육, 운영실적 평가 등의 규정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추가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명확히 포함되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참고로 저는 아청법까지 한번 훑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왜냐하면 아청법이 오히려 딥페이크하고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서 지금 성폭력방지법은 정부 의견을

좀 짧게 얘기해 주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전문위원은 아청법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의 삭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는 삭제지원으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회복 지원으로 수정 수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5페이지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는 부분은 수용입니다.

그다음에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는 부분은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수정 수용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범죄경력 자료 및 인적사항 요청 대상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행위자를 추가하고 자료의 범위와 요청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21쪽,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수석전문위원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29쪽,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 교육도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제가 보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방통위하고 그다음에 경찰청의 수정 의견들이 조금 있어요, 기재부도 수정의견이 있고. 그 부분은 쟁점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통과는 시키되 제가 볼 때는 아청법하고 한꺼번에 일괄해서 그날 전체적으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지금 논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건은 의결을 보류하겠습니다.

---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4)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7)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30)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7)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4)

(12시28분)

○소위원장 김한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15항부터 19항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1쪽입니다.

이병진·이달희 의원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특별규정으로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와 강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현행 1년 이상에서 이병진 의원안은 3년 이상, 이달희 의원안은 5년 이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현행 3년 이상에서 이병진 의원안은 5년 이상, 이달희 의원안은 7년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에는 그 죄질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죄들과 죄질 및 가별성의 정도가 유사한지 여부,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정형을 상향할 경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정형 상향 대상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로 한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김남희·강유정 의원안은 사법경찰관리가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 등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접속차단 요청, 그루밍 행위자에게 범죄행위의 제지 및 처벌 경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시설 또는 상담시설 인도 등의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8쪽 하단입니다.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수사의 효율성 및 해당 행위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9쪽,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판단 권한과 삭제·차단요청 권한을 주는 것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구축된 심의절차 및 불법촬영물 신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4시간 내 긴급심의 후 삭제·차단조치와 비교하여 더 유익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0쪽입니다.

경찰청은 영상물 삭제 관련해서 경찰이 방심위의 고유 권한 및 업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되며 그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수사력 집중을 저해하여 검거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제지 및 경고 관련하여 위장수사 대상 범죄인 성착취 목적 대화가 발생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제지·경고를 할 경우 위장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공간이 곧바로 삭제되어 위장수사 실시 가능성이 처음부터 차단될 수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시설·상담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은 업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7쪽입니다.

조은희 의원안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 자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48시간 이내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경우 수사의 남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신분비공개수사는 상대적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적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통되면 돌이키기 어렵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는 현장이 빠르게 생성·삭제·변화되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혈행법상 긴급한 경우 신분위장수사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정부 측 의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먼저 1쪽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부분에 있어서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수석전문위원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협박·강요의 대상 한정 논의 시도 역시 사람 대신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하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조치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실제 조치하려는 주체인 경찰청과 관련 기관인 방통위의 신중 검토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동일한 의견으로 수용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7페이지하고 8페이지 이 조치의무, 그러니까 7·8·9·10 여기 부분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신중 검토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미리 살펴보니까 일부는 저 개인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통과는 시키되 표현들이나 자구 수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시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들도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당 간사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일정을 다시 잡아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법안소위에서 추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발견부터 삭제조치까지 소요시간 통계가 필요합니다. 통계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한규 부탁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당초 여야 간사 간에 크게 한 네 가지, 양육비 그리고 딥페이크, 그다음에 오늘 못 했는데 아이돌봄하고 한부모가족 지원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회적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법안들의 양이 많아서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최소한 양육비하고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속하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아 주셨으니까 꼭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과를 보여 드리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차관님 그리고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또 보좌직원,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위원회 직원분과 속기사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

### ○출석 위원(8인)

김남근 김남희 김상욱 김한규 백승아 서범수 전진숙 한지아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입법심의관 김정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

기획조정실장 김기남

청소년가족정책실장 황윤정

권익증진국장전담직무대리 조용수

가족정책관 최성지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장 이미정